

# 1. 예산총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7,055,772	10,411,673
일반회계	304,671,871	9,140,156
특별회계	42,383,901	1,271,517
기타특별회계	42,383,901	1,271,5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22,236	42,667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41,000	4,230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3,994,659	119,840
수질개선특별회계	15,911,685	477,3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8,564	17,657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6,840,000	205,2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42,000	19,26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089,467	212,684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81,000	2,4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38,740	25,162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834,550	145,037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4,435,634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1,435,634천원을 포함한다.

제 5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